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제정 1999. 8. 28.	개정 2000. 2. 29.
개정 2000. 11. 22.	개정 2001. 11. 8.
개정 2003. 8. 27.	개정 2008. 9. 16.
개정 2009. 4. 3.	개정 2011. 1. 26.
개정 2012. 1. 10.	개정 2013. 1. 15.
개정 2013. 10. 16.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11. 11.	개정 2015. 10. 15.
개정 2017. 3. 20.	개정 2017. 6. 13.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11.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대학원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장과 이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교무과장이 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 1. 26)

제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 학

제5조(선발시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시마다 공고한다.

제6조(학과·학부 모집정원) 대학원의 각 학과·학부(이하 “학과(부)”라 한다.)의 학생 모집정원은 모집할 때마다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도교수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4. 3)

제7조(입학지원 서류) 입학할 지원자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서류는 모집할 때마다 모집요강에 정한다. (개정 2009. 4. 3, 2011. 1. 26)

제8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전형을 실시한다. (개정 2011. 1. 26)

1. 서류심사

2. 전공에 관한 평가

3. 면접

② 전공에 관한 평가는 지원 학과(부)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응용능력 및 판단력을 구술 또는 필답 고사로 평가한다. 다만,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과(부)에서는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삭제(2003. 8. 27)

④ 면접은 A·B·C·D로 평가하되 D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전공에 관한 평가와 면접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이 실시한다.

제9조(특별전형) ①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비율·대상자의 자격기준·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입학전형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확정·발표한다.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6, 2017. 6. 13.)

1. 삭제(2017. 6. 13.)

2. 삭제(2015.10.15.)

3. 삭제(2017. 6. 13.)

4. 삭제(2017. 6. 13.)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제4장 교육과정·개강교과목·수강신청·선수교과목·학점교류 및 성적평가

제12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3학점단위의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1학점 단위로 한다. (개정 2009. 4. 3) (단서개정 2014. 2. 11)(개정 2015.10.15.)

② 동일 계열 또는 관련 학과·전공(이하 “학과(전공)”이라 한다)들은 공통교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교육학부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전공으로 편성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은 연계하여 편성한다.

제13조(개강 교과목)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 학기에 개강할 교과목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개강교과목을 공고한다.

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 26, 2013. 1. 15, 2014. 11. 11)

④ 1인의 교수가 매 학기 담당하는 교과목은 2개 교과목(논문연구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6)

1. 석사과정 : 3학기부터

- 2. 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 2학기부터
- 3. 박사과정 : 3학기부터(개정 2017. 3. 20.)
- 4.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부터 (개정 2019. 11. 9.)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교과목에 의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과(전공) 주임 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2017. 6. 13.)
- ④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통산 석사과정의 경우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 10, 2017. 6. 13.)
- ⑤ 다른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2017. 6. 13.)

제15조(폐강)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인 교과목(논문연구 제외)은 개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학생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

제16조(선수교과목) ① 각 학과(전공)별 선수교과목은 이 대학교의 학사 학위과정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주임 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학칙 제22조의 학점 외에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5)
- ③ 선수교과목은 교과목 당 성적등급이 B⁺이상이어야 이수로 인정한다.

제17조(학점의 교류 및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전까지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21학점 이내로 하며 학기 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이 교류협정에 의하여 국외대학교의 대학원에 파견되어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6)
- ③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국내·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3. 10. 16)
- ④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중에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경우 B⁺이상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6)
- ⑤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석사과정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교육과정에서 B⁺이상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재 이수)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은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교과목의 원 취득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 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제19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실험과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실험과 연구보고서는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수강생수가 5명 이상인 교과목의 성적은 A⁺의 인원을 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 10)

제20조(지도교수) ①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3. 1. 15)

③ 논문지도교수 1인이 지도하는 학생은 매 학년마다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와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원 2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3. 1. 15)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2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년도 2회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공고한다. (개정 2009. 4. 3)

제23조(시험위원) 외국어 시험위원과 종합시험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과목을 선택하되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학과(전공)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외국어 1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 10, 2018. 3. 30.)

② 외국어시험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③ 외국어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④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우리대학교 외국어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⑤ 순천대학교 석사과정에서 합격한 외국어시험은 박사과정 학위취득 때까지 유효하다. (개정 2018. 3. 30.)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과목 이상,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4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하며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6)

②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4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4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균등급 B.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26, 2013. 10. 16)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재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제27조<삭제> 2003.8. 27

제28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논문은 4학기(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전공교과목 24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o이상인 사람. (개정 2009. 4. 3, 2011. 1. 26, 2013. 10. 16)

2. 박사학위논문은 수업연한의 등록을 하고 전공교과목 36학점(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o이상인 사람. (개정 2009. 4. 3, 2011. 1. 26, 2013. 10. 16)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1. 26)

② 삭제(2008. 9. 16)

제29조(학위논문 제출시기) ① 학위论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심사용 논문을 4월 및 10월까지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완료한 논문은 6월 30일 및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위청구 논문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1. 26)

제31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석사과정은 4부, 박사과정은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완료한 학위논문은 전자논문 CD 3매, 하드 표지 인쇄본 3부를 제출한다.

(개정 2013. 10. 16)

제32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이 대학교 이외의 학계 전문가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이외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이 대학교 이외의 학계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대학교 이외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3. 2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⑤ 대학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⑦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위논문심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예비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심사를, 본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뜻한다.

② (삭제 2017. 3. 20.)

③ (삭제 2017. 3. 20.)

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공개발표회를 거쳐야 한다.

제34조(학위논문 공개발표) ① 공개발표용 논문요지는 공문서 규격용지(A4판) 인쇄물로 한다.

②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각 학과(전공)별로 한다.

③ 학위논문 공개발표에는 해당 학과(전공) 교수 및 학생이 참석하여야 한다. (2009. 4. 3)

④ 공개발표 후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 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이상의 “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제36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실시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내용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거나 관련 학회지, 정기간행물,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등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6)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제38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에, 박사학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기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제5호, 서식의 학위기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2013. 1. 15)

제38조의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1. 1. 26)

제39조(수료인정)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40조(학위수여 추천) 학칙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의결사항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학위기) 명예박사학위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위기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학위기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2013. 1. 15)

제10장 장학금

제42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그 밖에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 규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순천대학교장학금지침및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9. 8. 28)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순천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2. 순천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부 칙(2000. 2. 29)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한 자도 제28조의 자격을 갖추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08. 9.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3)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0.)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4항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학생이 희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3.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박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6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6.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

년 월 일

순천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순천대 석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

년 월 일

순천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순천대 박

(제38조 별지 제3호 서식)

Sunchon National University

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the degree of

Master of _____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is diploma is issued at Sunchon, Korea,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belonging to that degree

on the _____ day of _____

in the Year _____

President

Dean of the Graduate School

(제38조 제5호 서식)

Sunchon National University

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the degree of

Doctor of _____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is diploma is issued at Sunchon, Korea,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belonging to that degree

on the _____ day of _____

in the Year _____

President

Dean of the Graduate School

(제39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 4. 3, 2013. 1. 15)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학위 과정 ○○○학과(학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 분은 함으로써 학술발전과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박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제41조 제9호 서식)

Sunchon National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the academic and cultural development
between _____ and Korea
hereby confers upon

the honorary degree of

Doctor of _____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belonging to that degree.

Given at Sunchon, Korea

on the _____ day of _____

in the Year _____

President

Dean of the Graduate School